

Information
Countermeasure
Controls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보기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새로운 대상 규율
- Ⅲ 서비스에 영향이 많은 개정
-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특례 삭제
- Ⅴ 제재
- Ⅵ 공공기관에 관한 규정
- Ⅶ 마무리



들어가며





한 눈에 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 내역 통지,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고정형,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정보 처리, 결합, 안전조치, 적용 제외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국외 이전 중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CPO/국내대리인, ISMS-P, 영향평가, 유출통지·신고, 노출 삭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동의철회권, 전송요구권, AI결정 대응권, 손해배상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 조정 신청, 사실 조사, 분쟁 조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요건, 진행
제9장 보칙	적용 제외, 금지행위, 사전 실태점검, 과징금, 고발 및 징계권고, 개선권고
제10장 벌칙	형사처벌, 과태료



한 눈에 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 내역 통지,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고정형,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정보 처리, 결합, 안전조치, 적용 제외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국외 이전 중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CPO/국내대리인, ISMS-P, 영향평가, 유출통지·신고, 노출 삭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동의철회권, 전송요구권, AI결정 대응권, 손해배상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 조정 신청, 사실 조사, 분쟁 조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요건, 진행
제9장 보칙	적용 제외, 금지행위, 사전 실태점검, 과징금, 고발 및 징계권고, 개선권고
제10장 벌칙	형사처벌, 과태료



새로운 대상 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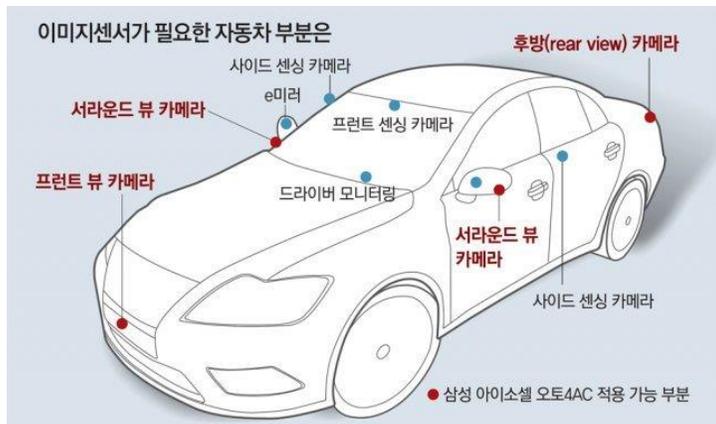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출처: 동아일보 2021.7.14



이동가능한 물체에 부착

신체에 착용

신체에 휴대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의

(1-1)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1-2)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2-1)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2-2)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
(제2조(정의) 제7호의2)

- 착용형: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
- 휴대형: 휴대전화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손쉽게 휴대
-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무인항공기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 또는 거치(영 제3조 제2항)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의2)

1.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은 일반적으로 금지(제1항)

- ◆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영상정보)을 촬영 금지
 - **업무 목적:** 개인정보처리자. 일반 개인은 제외
 - (참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설치운영 금지(제25조 제1항)

2.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제1항 제1호~제3호)

- 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고시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의2)

3. 촬영 제한 구역

-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촬영 제한 구역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경우: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제4항)

-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제8항 준용
 - 제6항: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
 - 제7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8항: 위탁 운영 가능
- ◆ 제25조 제5항은 준용에서 제외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기의 임의 조작이나 녹음 기능 사용 가능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제35조의2~제35조의4)

개정 전	시행일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2024. 3. 15부터 1년 이내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024. 3. 15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2023. 9. 15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제35조의2~제35조의4)

전송 요구권

▶ 정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의의: 여러 산업과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제35조의2~제35조의4)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5조의2)

◆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 **필수 개인정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제15조 제1항 제4호)
- 개인정보위가 전송 대상으로 의결한 개인정보

◆ 전송 요구권의 종류

다운로드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

이동요구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일정한 요건을 충족한)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제35조의2~제35조의4)

[신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5조의3)

◆ 지정

-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

◆ 업무

1.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제35조의2)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지정 요건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제35조의2~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제35조의4)

- ◆ 전송 요구권을 시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할 업무 규정

추후 진행될 사항

추후 진행될 사항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 직접 전송이 가능한 API 시스템의 구축
- ✓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수립
- ✓ 정보주체의 통제권 확보
- ✓ 전송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규정



3.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 시행일: 2024. 3. 15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 **[신설]**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3.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 ◆ 자동화된 결정: AI 등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뤄지는 결정
 - 예) AI 기반 면접, 자기소개서 평가, 신용평가
- ◆ 정보주체의 권리

결정 거부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설명 요구권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예외)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3.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참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 결정 거부, 설명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제3항)
 -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 제외
 - 인적 개인에 의한 재처리
 - 설명
-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제4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3.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추후 진행될 사항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

- ✓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 ✓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

※ 시행일: 2024. 3. 15



서비스에 영향이 많은 개정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처리의 적법성(제15조 제1항)

제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제2호~제7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1. 필수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가능(제4호)

개정 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개정 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은 동의 없이 수집 가능. 필수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입증 책임
 - '불가피하게': 특정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입증 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필수 동의가 필요 없을 수 있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2. 기타

- ◆ 5. [개정]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 ◆ 7. [신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설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목적 범위 내 이용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호~제7호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에만 해당.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관리(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위해 진료 내역 수집 불가피: 개인정보 수집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음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예시: 이용약관 [현행법]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법] 개정 (예)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 의료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 해설> p99)
6. (1)개인정보처리자의 <u>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u> 필요한 경우로서 (2) <u>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u>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3) <u>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u> 에 한한다.	(예) 회사가 이동전화요금 일부를 대납해 주던 '분리과금' 해지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 경우 (<법령 해설> p101)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법] 신설. 코로나와 같은 법정 전염병 등에 해당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구분	동의 방법
최소정보 수집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정보에 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구분 동의	<p>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외 이용·제공(제18조),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제공(제19조) 민감정보 처리(제23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4조) 홍보·판매 권유 목적
동의없이 처리 가능한 정보 표시	<p>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선택 동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만14세 미만 아동	아동 개인정보 처리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중요 내용 표시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
거부권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통지

▶ 적용 조항

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정의

[개정]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 통지 요건

(1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 통지 기한

[개정] 유출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 (영 제39조 제1항)

[개정] [예외] 72시간이 넘어 통지할 수 있는 경우

✓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가능(영 제39조 제1항)

▶ 통지 방법

- [개별 통지(서면 등의 방법)]
- [예외] 연락처가 없으면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개정 전] 유출 → [개정 후] 유출 등(분실·도난·유출)

▪ [개정 전] 24시간 이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5일 이내(일반 개인정보처리자) → [개정 후] 72시간 이내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통지

▶ 통지 내용

다음 5가지를 정보주체에 통지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지 내용 예외] 위 1 또는 2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파악한 것과 3~5를 먼저 정보주체에 통지(우선 통지)하고, 나머지는 파악한 즉시 통지(추후 통지)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신고

▶ 적용 조항

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정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 신고 요건

-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40조 제1항)
 1.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신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신설]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 [신설] [예외]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정의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신고 기한

[개정] 유출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 (영 제40조 제1항)
 ✓ 72시간이 넘어 신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음

▶ 신고 내용

통지 내용과 동일, 신고 내용 예외도 통지 내용 예외와 동일

▶ 신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4.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6조)

위탁자의 책임 확대: 수탁자 → 재수탁자

- 수탁자의 정의 확대(제2항)
 - ✓ **[개정 전]**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 **[개정 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재수탁자**)를 포함
- 다음 조항의 '수탁자'에 '재수탁자' 포함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 공개(제3항)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제4항)
 - ✓ **[신설]** 수탁자가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취득(제6항)
 - ✓ **수탁자**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위탁자의 책임(제7항)

[개정] 수탁자의 책임 강화(제8항) – 적용 조항 추가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 위반 사항이나 협의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 요구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과 평가(제30조,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내용과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9조~제21조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개하라고 한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 공공기관)」, 2022.3.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3의3.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신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신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과 평가(제30조,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제30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반드시 CPO의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음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쿠키에 대한 설명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영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추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과 평가(제30조, 제30조의2)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제30조의2)

◆ 평가 기준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 대상(영 제31조의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3.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방식
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 평가 기준 및 절차(영 제31조의3)

◆ 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 고시(예정)



6.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전	개정 후	설명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에 동의철회권 포함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동의철회권		

동의철회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예) 뉴스레터 수신 동의 철회
- [개정 전] 동의를 철회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파기
- [개정 후] 처리정지권과 같은 사유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 제36조, 제37조)

열람요구권(제35조)

정보주체(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열람 제한·거절 사유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조세, 성적 평가, 시험 및 자격 심사 등)

정정·삭제권(제36조)

정보주체(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함.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정정·삭제 거절 사유

-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10일 이내: 개인정보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6.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 제36조, 제37조)

처리정지권(제37조)

정보주체(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처리 정지, 파기하여야 함.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처리정지 거절 사유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동의철회권(제37조)

이용자가(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동의 철회하고, 파기해야 함. 정당한 파기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동의 철회는 거절 불가,
파기 거절 사유 = 처리정지 거절 사유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개정 전	개정 후	설명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항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국외 이전 사유의 추가
N/A	[신설]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39조의12 제5항	제28조의11(준용규정)	국외 재이전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8)

국외 이전의 종류(제1항)

- 제3자 제공
조회·공유 포함 (예) 국외업체 제휴)
-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회·공유 포함(예) 해외 콜센터)
- 보관
(예) 국외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관)

[개정] 국외 이전 요건 추가(제1항)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제2호~제5호는 동의 없이 이전)
2. [개정] 처리위탁·보관
(1)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2-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2-2) 개별 통지한 경우
// 개정((1)요건을 추가)
3. [신설]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4. [신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ISMS-P 인증을 받고
(1)개인정보 안전조치 (2)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
5. [신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을 갖췄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9)

- ◆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사전 예방 조치는 아님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9)

국외 이전 중지의 요건(제1항)

1. 국외 이전 가능 요건 위반(제28조의8 제1항 위반)
 - ✓ 5가지 가능 요건 중 하나 이상 위반
2. 국외 이전 시 준수사항 위반(제28조의8 제4항 위반)
 -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계약 체결 금지 위반(제28조의8 제5항 위반)
4. 이전받는 자(기업 등)나 국가, 국제기구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정보주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9)

이의 제기(제2항)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행령 규정(제3항)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제1항)
-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특례 삭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제6장)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이용자'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정의를 들어내면서, 적용 법규와 대상에 상당한 변화가 생김

1. 폐기

특례 조항	설명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로그인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휴면 처리(분리 보관)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근거 조문

2. 기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조항에 통합

특례 조항	기존 일반 조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9조의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제6장) 삭제

3.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조항으로 전환(적용 대상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특례 조항	일반 조항으로 전환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제4절(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39조의15(과징금)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4. 기타 - 제29조(안전조치의무)

특례 시행령 조항	일반 시행령 조항
영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영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참고)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제29조)

개인정보	관련 조문	안전조치 의무(법률)	시행령	고시
개인정보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개정안] 영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민감정보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개정안] 영 제30조의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예정]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제한) 제4항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 삭제
고유식별정보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N/A	영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 제30조	
주민등록번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항- 암호화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N/A	N/A	
가명정보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제1항	N/A	영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항 // 영 제30조	



3. 과징금

개인정보	개정 전(39조의15)	개정 후(제64조의2)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 제64조의2 제1항 제1호~제9호에 해당
상한액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매출액의 3%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매출액 자료 제출 거부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회계자료와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



제재





1. 형사처벌

개정 전	위반 법규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제71조 제4호의5 현행 제39조의3 제1항 위반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사고 발생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제73조 제1호 제29조 등 위반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제73조 제1호의2 제21조 제1항 위반 	폐기



2. 손해배상제

개정 전	개정 후	설명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 손해액의 3배 	[개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 : 손해액의 최대 3배 → 최대 5배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N/A	[신설]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이 원고의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에 제출 명령 가능
N/A	[신설]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소송 시 법원이 영업비밀 보호 명령
N/A	[신설]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법원에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조정 신청 등)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조정에 응할 의무: 공공기관 	[개정] 제43조(조정 신청 등)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조정에 응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개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N/A	[신설]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제47조(분쟁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 불응답시 거부로 간주 	[개정] 제47조(분쟁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 불응답시 수락으로 간주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개정] 조정의 신청(제43조)

◆ 분쟁 당사자 (신청) → 분쟁조정위 (통지) → 분쟁의 다른 당사자

개정 전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제3항)

개정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제3항)

처리 기간(제44조)

◆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개정]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제45조)

- ◆ [신설] 분쟁조정위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사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음(제2항)
- ◆ [신설]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제4항)

[신설] 진술의 원용 제한(제45조2)

- ◆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함
 - 조정절차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개정] 분쟁의 조정(제47조)

개정 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제3항).

개정 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3항).



공공기관에 관한 규정





1. 공공기관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N/A	[신설]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024. 3. 15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023. 9. 15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2023. 9. 15
N/A	[신설]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신설]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14조~제17조)	2024. 9. 15



1. 공공기관 관련 개정사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1조의2)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 대상: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시기: 매년
- ◆ 기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 ◆ 평가 결과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

[개정]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외 대상

개정 전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파일

개정 후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파일



1. 공공기관 관련 개정사항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3조)

- ◆ 개인정보위가 관계 전문가의 육성 등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마련(제6항)
-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제7항)
- ◆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제75조 제2항 제16호, 제33조 제1항 위반)

[신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영 제30조의2)

- ◆ [신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14조~제17조)



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14조~제17조)

- 일반적인 안전조치 이외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 명시
- 공공시스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개인정보보호위가 지정한 시스템
 1.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접속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 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2.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한 표준배포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 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시스템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14조~제17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제15조)

- ✓ 1.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영 제30조의2 제4항)
- ✓ 2.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3.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4.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 ✓ 5. 제16조 및 제17조에 관한 사항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17조)

- ✓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 등 필요한 조치
-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제16조)

- ✓ 접근권한 관리는 인사정보와 연계.
- ✓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계정 발급 불가. 불가피하면 발급 내역에 기록하고 발급 가능
- ✓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보안서약서 징구
- ✓ 정당한 취급자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됐는지, 접근권한 변경 내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은 위 조치 수행

*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